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1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2월 2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재 동 조례의 추진계획은 ‘피·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 (제4조제2항제7호)’ 을 포함하고 있으며, 교육감에게 피·가해학생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(제12조) 별도 규정되어 있음.
- 따라서 안 제4조제2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피·가해 학생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운영 지원’ 은 중복규정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‘피·가해 학생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지원’ 을 삭제하고(안 제4조제2항제8호),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 <신설></p> <p>8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피·가해 학생의 갈등 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운영 지원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	<p>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 <삭제></p> <p>8. (개정안 9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

제10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전문상담 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⑤ <u>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⑥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